

Vol.1515

법원공보

2017. 3. 1. WED.



법원행정처

● 목 차

규 칙	421	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내 규	423	국가채권관리 사무의 위임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
	426	법원정보공개규칙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
	428	법원관사 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
예 규	430	회계관계 공무원의 관리기간 조서비치 및 명단보고 일부개정예규
	433	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
신법령 목록	438	
공 고	442	

● 규 칙

◎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
(대법원규칙 제2721호 2017. 2. 13. 공포)

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8제1항 중 “15호봉 이하 법관”을 “법관인사규칙 제11조의3제1항에 의하여 지명된 법관 및 15호봉 이하 법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

제11조의8(직무성과금)

- ① 15호봉 이하 법관에 대하여는 직무의 내용·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성과금을 지급한다.
- ② ~ ⑤ (생략)

개 정 안

제11조의8(직무성과금)

- ① 법관인사규칙 제11조의3제1항에 의하여 지명된 법관 및 15호봉 이하 법관 -----
-----.
-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● 내 규

◎ 국가채권관리 사무의 위임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

(대법원내규 제478호 2017. 2. 7. 결재)

국가채권관리 사무의 위임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]

채권관리관의 관직지정

회계직명 기관별		채권관리관	동대리자	분임채권 관 리 관	동대리자
대 법 원 법원행정처		법원행정처장	행정관리실장		
사법연수원		사법연수원장	사무국장		
사법정책연구원		사법정책연구원장	사무국장		
법원공무원교육원		법원공무원교육원장	사무국장		
법원도서관		법원도서관장	사무국장		
고 등 법 원 특 히 법 원 지 방 법 원 가 정 법 원 행 정 법 원 회 생 법 원		법원장	사무국장		
지 원	사 무 국 설치지원			지원장	사무국장
	사 무 과 설치지원			지원장	사무과장

부 칙

이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

[별표]

채권관리관의 관직지정(제2조 관련)

회계직명 기관별	채권 관리관	동대리 자	분임채권 관 리 관	동대리 자
대 법 원 법원행정처	법원행정처장	행정관 리실장		
사법연수원	사법연수원장	사무 국장		
사법정책 연구원	사법정책연구 원장	사무 국장		
법원공무원 교육원	법원공무원 교육원장	사무 국장		
법원도서관	법원도서관장	사무 국장		
고 등 법 원 특 허 법 원 지 방 법 원 가 정 법 원 행 정 법 원	법원장	사무 국장		
지 원	사 무 국 설치지원		지원장	사무 국장
	사 무 과 설치지원		지원장	사무 과장

개 정 안

[별표]

채권관리관의 관직지정(제2조 관련)

회계직명 기관별	채권 관리관	동대리 자	분임채권 관 리 관	동대리 자
대 법 원 법원행정처	법원행정처장	행정관 리실장		
사법연수원	사법연수원장	사무 국장		
사법정책 연구원	사법정책연구 원장	사무 국장		
법원공무원 교육원	법원공무원 교육원장	사무 국장		
법원도서관	법원도서관장	사무 국장		
고 등 법 원 특 허 법 원 지 방 법 원 가 정 법 원 행 정 법 원 회 생 법 원	법원장	사무 국장		
지 원	사 무 국 설치지원		지원장	사무 국장
	사 무 과 설치지원		지원장	사무 과장

◎ 법원정보공개규칙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

(대법원내규 제479호 2017. 2. 15. 결재)

법원정보공개규칙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행정법원, 법원행정처”을 “행정법원, 회생법원, 법원행정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정보공개심의회)</p> <p>① 각 고등법원, 특허법원, 각 지방법원, 각 가정법원, <u>행정법원, 법원행정처</u>,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외 부전문가 위촉비율은 3분의 1이상으로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6조(정보공개심의회)</p> <p>① 각 고등법원, 특허법원, 각 지방법원, 각 가정법원, <u>행정법원, 회생법원, 법원행정처</u>,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외 부전문가 위촉비율은 3분의 1이상으로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◎ 법원관사 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

(대법원내규 제480호 2017. 2. 15. 결재)

법원관사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 5]

고등법원장이 관사관리관인 소속 법원 및 지원

고등법원	소속기관	소속 법원	소속 지원
서울		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	
대전		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	
대구		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	서부지원
부산		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	동부지원
광주		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	

부 칙

이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

[별표 5]

고등법원장이 관사관리관인 소속 법원 및 지원

소속기관 고등법원	소속법원	소속지원
서울	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〈신설〉	
대전	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	
대구	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	서부지원
부산	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	동부지원
광주	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	

개정안

[별표 5]

고등법원장이 관사관리관인 소속 법원 및 지원

소속기관 고등법원	소속법원	소속지원
서울	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	
대전	현행과 같음	
대구	현행과 같음	현행과 같음
부산	현행과 같음	현행과 같음
광주	현행과 같음	

예 규

◎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리기간 조서비치 및 명단보고 일부개정예규

(대법원행정예규 제1116호 2017. 2. 7. 결재)

회계관계 공무원의 관리기간 조서비치 및 명단보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 1]

회계직명일람표

회계직명	구분	법 원 행정처	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	고등법원 특허법원	지방법원 (가정법원, 행정법원, 회생법원포함)	지 원	등 기 소	비 고
	채 권 관 리 관	○	○	○	○			
분 임 채 권 관 리 관						○		
수 입 징 수 관 및 재 무 관	○	○	○	○	○			
분 임 수 입 징 수 관 및 분 임 재 무 관						○		
지 출 관	○	○	○	○	○			
분 임 지 출 관						○		
공 탁 관					○	○		
관 서 운 영 경 비 출 납 공 무 원				○	○	○		
물 품 관 리 관	○	○	○	○	○			
분 임 물 품 관 리 관						○		
물 품 운 용 관	○	○	○	○	○	○	○	
수 입 금 출 납 공 무 원	○	○	○	○	○	○		
유 가 증 권 취 급 공 무 원	○	○	○	○	○	○		
임 치 사 무 담 당 관					○	○		
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공 무 원	○	○	○	○	○	○		
물 품 출 납 공 무 원	○	○	○	○	○	○		

부 칙

이 예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

[별표1]

회계직명일람표

회계직명	구분 법원행정처	사법연수원 사법정책 연구원, 법원공무 원교육원, 법원도서관	고등 법원, 특허 법원	지방 법원 (가정 법원, 행정 법원, 포함)	지원 지원	등기 소	비고
채권관리관	○	○	○	○			
분임채권 관리관					○		
수입장수관및재무관	○	○	○	○			
분임수입장수관 및분임재무관					○		
지출관	○	○	○	○			
분임지출관					○		
공탁관				○	○		
관서운영경비출 납공무원			○	○	○		
물품관리관	○	○	○	○			
분임물품관리관					○		
물품이용관	○	○	○	○	○	○	
수입금출납 공무원	○	○	○	○	○		
유가증권취급 공무원	○	○	○	○	○		
임치사무담당관				○	○		
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	○	○	○	○	○		
물품출납공무원	○	○	○	○	○		

개정안

[별표1]

회계직명일람표

회계직명	구분 법원행정처	사법연수원 사법정책 연구원, 법원공무 원교육원, 법원도서관	고등 법원, 특허 법원	지방 법원 (가정 법원, 행정 법원, 회생 법원 포함)	지원 지원	등기 소	비고
채권관리관	○	○	○	○			
분임채권 관리관					○		
수입장수관및재무관	○	○	○	○			
분임수입장수관 및분임재무관					○		
지출관	○	○	○	○			
분임지출관					○		
공탁관				○	○		
관서운영경비출 납공무원			○	○	○		
물품관리관	○	○	○	○			
분임물품관리관					○		
물품이용관	○	○	○	○	○	○	
수입금출납 공무원	○	○	○	○	○		
유가증권취급 공무원	○	○	○	○	○		
임치사무담당관				○	○		
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	○	○	○	○	○		
물품출납공무원	○	○	○	○	○		

◎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

(대법원행정예규 제1117호 2017. 2. 15. 결재)

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단서 중 “다만, 제4조제1항제1호 사유에 따른 보관은행 지정의 경우에는”를 “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5조제4항 중 “소집하여 심사를 한 다음”을 “소집하여 별표 1.(보관은행 지정 심사기준표)에 따라 심사를 한 다음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법원행정처장은 보관은행에 대하여 5년에 한 번씩 정기적격성심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법원행정처장은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공개경쟁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7조제3항의 “소집하여 심사를 한 다음”을 “소집하여 별표 2.(보관은행 정기적격성 심사기준표)에 따라 심사를 한 다음”으로 한다.

별표 1, 2를 별지 1, 2 아래에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[별표 1]

보관은행 지정 심사기준표

평가내용	배점	평가요소	평가지표	배점
1. 재무구조의 신뢰성	35	가. 영업 안정성	자기자본비율(BIS기준)	6
			총자산이익율(ROA)	6
		나. 자산 건전성	무수익 여신비율	6
			리스크 관리능력	6
		다. 대내외 신용도	국내신용평가기관의 평가	6
			해외신용평가기관(S&P, Moody's 등)의 평가	5
II. 공탁 등 법원 업무 수행능력	35	가. 공탁업무 전문성	전문인력의 확보 정도, 전문인력의 관리 및 교육계획, 공탁소와의 유기적 협력능력 등	10
		나. 공탁업무 전산 처리 능력	공탁업무 관련 전산망 구축 정도, 법원전산망과의 연결 정도 등	6
		다. 업무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처능력	전산 Backup System 구축 정도, 비상시의 인력운용능력 등	5

평가내용	배점	평가요소	평가지표	배점
		라. 공탁금의 지급 담보능력	공탁금의 확실한 지급담보방안, 공탁금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	5
		마. 보관금·송달료 업무 수행능력	전문인력의 관리능력, 보관금·송달료 업무의 전산처리능력, 법원과의 유기적 협력능력 등	9
Ⅲ. 민원인의 이용 편의성 및 지역 사회등 기여도	30	가. 민원인의 이용 편의성	해당 지역의 지점 현황 및 계획, 공탁금 등 납부편리상태 및 증진 방안 등	15
		나. 법원소재지 지역사 회에 대한 기여도	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, 지역사회에 기여 할 계획 등	10
		다. 공익사업 기여도	공익사업에 기여한 실적, 앞으로의 공익사 업 기여계획 등	5
총 점	100			

[별표 2]

보관은행 정기적격성 심사기준표

평가내용	배점	평가요소	평가지표	배점
Ⅰ. 공탁 등 법원 업무 수행실적 및 수행능력	40	1. 지난 5년간 공탁 업무 처리에 대한 평가	업무실적	7
			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(민원인 및 공탁 관 만족도 등)	8
		2. 공탁업무 수행능력	전문인력의 확보 정도, 전문인력의 관리 교육, 공탁소와의 유기적 협력 실적, 전산 장비 및 현황 등	10
		3. 업무장애에 대비 한 비상대처능력	전산 Backup System 구축 정도, 비상시 의 인력운용능력 등	5
4. 보관금·송달료 업무 수행실적 및 수행능력	전문인력의 관리능력, 전산처리능력, 법원과의 유기적 협력 실적 등	10		

평가내용	배점	평가요소	평가지표	배점
Ⅱ. 재무구조의 신뢰성	25	1. 영업안정성	BIS기준 자기자본비율	4
			총자산이익률(ROA)	4
		2. 자산건전성	무수익 여신비율	4
			리스크 관리능력	3
		3. 대내외 신용도	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	5
국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	5			
Ⅲ. 민원인 이용 편의성 및 지역사회 등 기여도	25	1. 민원인 이용 편의성	해당 지역의 지점 현황, 청사 내에 영업점이 있는지 여부, 납부편리상태 등	15
		2. 지역사회 및 공익사업 기여도	지역사회 및 공익사업에 기여한 실적, 저소득시민 대출실적, 중소기업 대출실적, 창업자금 대출실적 등	10
Ⅳ. 향후 5년간 공탁업무이행계획서의 내용	10	공탁업무 이행계획서의 내용	향후 5년간 공탁업무이행계획서의 내용	10
총계	100			100

부 칙

이 예규는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보관은행의 지정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의 보관은행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제4조제1항제1호 사유에 따른 보관은행 지정의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2조(보관은행의 지정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보관은행 지정절차)</p> <p>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제3항의 심사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소집하여 심사를 한다. 다음 그 결과를 심사요청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⑤ (생 략)</p>	<p>제5조(보관은행 지정절차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소집하여 별표 1.(보관은행 지정 심사기준표)에 따라 심사를 한 다음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보관은행의 정기적격성심사)</p> <p>① 법원행정처장은 보관은행에 대하여 5년에 한 번씩 정기적격성심사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6조(보관은행의 정기적격성심사)</p> <p>① ----- ----- . 다만, 법원행정처장은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공개경쟁 방식으로 보관은행을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

제7조(정기적격성심사 절차)

- ① ~ ② (생 략)
- ③ 제2항의 심사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소집하여 심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심사요청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(생 략)

개 정 안

제7조(정기적격성심사 절차)

-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-----
-----소집하여 별표 2.(보관은행 정기적격성 심사기준표)에 따라 심사를 한 다음-----.
- ④ (현행과 같음)

신법령 목록 (2017. 2. 1. ~ 2. 15.)

		공포일	관보호수	관보면수
【법률】				
법률제14554호	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	2017. 2. 8	18944	4
법률제14555호	병역법 일부개정법률	"	"	4
법률제14556호	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	"	"	6
법률제14557호	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	"	"	13
법률제14558호	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	"	"	14
법률제14559호	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	"	"	15
법률제14560호	약사법 일부개정법률	"	"	16
법률제14561호	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	"	"	17
법률제14562호	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	"	"	18
법률제14563호	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	"	"	22
법률제14564호	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	"	"	23
법률제14565호	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	"	"	24
법률제14566호	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	"	"	25
법률제14567호	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	"	"	38
법률제14568호	동·서·남·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	"	"	110
법률제14569호	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	"	"	113
법률제14570호	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	"	"	146
【조약】				
조약제2341호	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	2017. 2. 2	18940	4
조약제2342호	무기거래조약	2017. 2. 9	18945	4
【대통령령】				
대통령령제27828호	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2017. 2. 3	18941	4
대통령령제27829호	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17
대통령령제27830호	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	"	"	37
대통령령제27831호	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47

대통령령제27832호	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2017. 2. 3	18941	48
대통령령제27833호	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2017. 2. 7	18943	4
대통령령제27834호	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8
대통령령제27835호	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10
대통령령제27836호	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25
대통령령제27837호	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26
대통령령제27838호	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31
대통령령제27839호	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 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	"	"	37
대통령령제27840호	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 정 일부개정령	"	"	41
대통령령제27841호	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42
대통령령제27842호	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44
대통령령제27843호	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48
대통령령제27844호	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49
대통령령제27845호	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49
대통령령제27846호	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51
대통령령제27847호	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52
대통령령제27848호	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53
대통령령제27849호	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107
대통령령제27850호	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107
대통령령제27851호	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108
대통령령제27852호	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	"	"	109
대통령령제27853호	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110
대통령령제27854호	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111
대통령령제27855호	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112
대통령령제27856호	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2017. 2. 13	18947	4
대통령령제27857호	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	"	"	4
대통령령제27858호	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5

대통령령제27859호	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	2017. 2. 13	18947	6
대통령령제27860호	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7
대통령령제27861호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8

【총리령】

총리령제1362호	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2. 3	18941	53
총리령제1363호	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65
총리령제1364호	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67
총리령제1366호	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74
총리령제1365호	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2. 6	18942	4
총리령제1368호	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2. 10	18946	5
총리령제1369호	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11
총리령제1370호	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	2017. 2. 15	18949	4

【부령】

산업통상자원부령제240호	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2. 1	18939	4
해양수산부령제223호	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7
보건복지부령제476호	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2. 2	18940	12
교육부령제118호	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2. 3	18941	79
교육부령제119호	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	"	"	80
교육부령제120호	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89
문화체육관광부령제284호	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89
보건복지부령제477호	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138
보건복지부령제478호	병원체자원의 수집·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	"	"	141
고용노동부령제179호	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	"	"	143
국토교통부령제393호	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146
국토교통부령제394호	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	"	"	148
법무부령제887호	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2. 7	18943	113
해양수산부령제224호	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2. 8	18944	148
행정자치부령제108호	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2. 9	18945	26

행정자치부령제109호	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	2017. 2. 9	18945	29
법무부령제888호	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	2017. 2. 10	18946	35
농림축산식품부령제245호	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38
보건복지부령제479호	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	"	"	39
농림축산식품부령제246호	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29
문화체육관광부령제285호	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2. 13	18947	10
문화체육관광부령제286호	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2. 14	18948	4
보건복지부령제480호	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일부개정령	"	"	5
국토교통부령제403호	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8
기획재정부령제589호	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2. 15	18949	22

공 고

관인 사용 공고

법원사무관리규칙 제40조, 동 시행내규 제56조에
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인을 별지와 같이
공고합니다.

2017년 2월 16일

서울 중앙 지 방 법




[별지 제23호서식]

관인대장

관인명	서울중앙지방법원 조사관인			1	
종류	<input type="checkbox"/> 청인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직인 <input type="checkbox"/> 특수관인	관리부서	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2과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등록 · <input type="checkbox"/> 재등록관인	(인영)	등록일 (재등록일)	2017년	2월 16일	
		새긴날	2017년	2월 14일	
		새긴사람			
		최초사용일	2017년	2월 17일	
		재료	회양묵		
		등록(재등록)사유	법원사무관리규칙 제2615호(2015.7.28.)		
		법원공고	년	월 일	(제 호)
		비고			
폐기관인	(인영)	등록일 (재등록일)	년	월 일	
		폐기일 (분실일)	년	월 일	
		폐기사유	<input type="checkbox"/> 마멸 <input type="checkbox"/> 분실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	
		폐기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소각 <input type="checkbox"/> 이관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	
		폐기자 (분실자)	소속:	성명:	
		법원공고	년	월 일	(제 호)
		비고			
※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<input type="checkbox"/> 등록란에 √표를, 재등록한 때에는 <input type="checkbox"/> 재등록란에 √표를 한다. ※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.					

[별지 제23호서식]

관인대장

관인명	서울중앙지방법원 조사관인			2
종류	<input type="checkbox"/> 청인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직인 <input type="checkbox"/> 특수관인	관리부서	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2과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등록 · <input type="checkbox"/> 재등록관인	(인영)	등록일 (재등록일)	2017년	2월 16일
		새긴날	2017년	2월 14일
		새긴사람		
		최초사용일	2017년	2월 17일
		재료	회양목	
		등록(재등록)사유	법원사무관리규칙 제2615호(2015.7.28.)	
		법원공고	년	월 일
		비고	(제 호)	
폐기관인	(인영)	등록일 (재등록일)	년	월 일
	폐기일 (분실일)	년	월 일	
	폐기사유	<input type="checkbox"/> 마멸 <input type="checkbox"/> 분실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	
	폐기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소각 <input type="checkbox"/> 이관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	
	폐기자 (분실자)	소속:	성명:	
	법원공고	년	월 일	
	비고	(제 호)		
※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<input type="checkbox"/> 등록란에 V표를, 재등록한 때에는 <input type="checkbox"/>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. ※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.				

[별지 제23호서식]

관인대장

관인명	서울중앙지방법원 조사관인			3
종류	<input type="checkbox"/> 청인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직인 <input type="checkbox"/> 특수관인	관리부서	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2과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등록 <input type="checkbox"/> 재등록관인	(인영) 	등록일 (재등록일)	2017년	2월 16일
		새긴날	2017년	2월 14일
		새긴사람		
		최초사용일	2017년	2월 17일
		재료	회양목	
		등록(재등록)사유	법원사무관리규칙 제2615호(2015.7.28.)	
		법원공고	년	월 일 (제 호)
		비고		
폐기관인	(인영)	등록일 (재등록일)	년	월 일
		폐기일 (분실일)	년	월 일
		폐기사유	<input type="checkbox"/> 마멸 <input type="checkbox"/> 분실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
		폐기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소각 <input type="checkbox"/> 이관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
		폐기자 (분실자)	소속 : 직급 :	성명 :
		법원공고	년	월 일 (제 호)
		비고		
※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<input type="checkbox"/> 등록란에 √표를, 재등록한 때에는 <input type="checkbox"/> 재등록란에 √표를 한다. ※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.				